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경 영 성 과 계 약 서



구 리 시



구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시-구리도시공사 경 영 성 과 계 약 서

구리시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본 경영성과계약의 내용을 상호 충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2018년 12월 1일

구 리 시 장

안 승 남 **안승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강 지 원 **강지원**

경영성과 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장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시장과 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고, 제반 경영 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이라 한다), 공사의 「구리도시공사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사장은 법, 조례, 공사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사장은 정관에 따라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등) ①사장은 재임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중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사장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장은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을 받아 패널티(주의, 경고, 해임 등)를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7조(경영목표) ①사장은 매년 별표1과 같이 경영목표를 정하고 달성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시장은 공사의 경영환경과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사장의 의견을 받아 매 사업연도마다 경영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경영실적보고) 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한다. 다만 평가 완료 시기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1와 같다.

③ 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경영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① 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목표 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기본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을 시킬 수 있다. 사장의 경영성과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한다. 다만, 사장의 해임기준에는 경영성과 이외에 시장이 별도로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평가대상 사업 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사장이 재임한 경우에 연봉조정과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1조(보수체계) 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본연봉) ① 사장의 기본연봉액은 별표3와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사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③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급) ①사장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성과급 지급시기는 성과급이 확정된 년도의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 시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퇴임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사장이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①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사장이 재임시 지급받은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리후생 등) ①공사는 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시장과 협의 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구리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①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용일로부터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이며,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9조에 의한 2018년도(임기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는 2019년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와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실시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년에 실시하는 행전안전부 주관 2019년('18년 실적) 경영평가와 구리시 주관 이행 목표실적평가는 사장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 연봉 조정은 없으며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제출) 별표 1인 2018~2019년도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2020년부터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평가기준은 시장과 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붙임 1.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1부.
2.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1부.
3. 기본연봉 1부.
4. 연봉 조정표 1부.
5. 성과급 지급률표 1부.
6. 사장 연임 및 해임기준 1부. 끝.

【별표 1】

경영목표(2018~2019) 및 평가기준

경영목표	평가기준	목표치	기준치	배점	비고
책임경영구현 (5점)	1. 사장의 리더십	100%	60%	5점	비계량
사회적 가치 (8점)	1. 고객 및 주민참여	100%	60%	3점	비계량
	2. 윤리경영	100%	60%	2점	비계량
	3. 재난안전관리	100%	60%	3점	계량
경영시스템 (20점)	1. 경영개선안 이행실적 - 구리시,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경영개선안 이행 실적	100%	60%	10점	비계량
	2. 수탁관리 사업 운영 - 수탁관리 실적(3점) - 시설·환경관리(2점) - 공공성 증진 노력(2점) - 고객서비스 품질관리(1점) - 신규 수탁관리사업(1점)	100%	60%	10점	계량 비계량
개발사업 경영성과 (57점)	1. GWDC 조성사업(25점) 2. 구리·남양주TV사업(10점) 3. 구리랜드마크타워건립(10점) 4. 갈매지식산업센터(3점) 5. 수택고앞다기능복합개발(3점) 6. 구리유통종합시장개발(3점) 7. 신규개발사업 추진(3점)	100%	60%	57점	비계량
정책 및 시책 준수 (10점)	1. 공기업 정책 준수(3점) 2. 행안부 경영평가 향상(3점) 3. 시책 및 지시사항 이행(4점)	100%	60%	10점	비계량
계	-	-	-	100점	정량 3점 비계량 97점

※ 목표치(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기준치(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수준)

- 목표치 달성 시 해당목표 만점, 기준치 미달 시 0점 처리

※ 비계량 지표 측정(평가기준 참조) : 9단계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① 책임 경영 구현 (5점)

지 표 명	1. 사장의 리더십				
지표정의	관리자의 경영비전, 전략 수립, 직원의 역량 증진 등 노력 평가				
배 점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선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직원의 동기부여,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 · 구리시, 시의회, 시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관리 노력 				

② 사회적 가치 구현(8점)

지 표 명	1.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정의	고객 및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만족도 조사 및 발표(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지 표 명	2. 윤리경영				
지표정의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배 점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경영 체제 구축 및 운영 노력 · 부패방지 및 청렴유지를 위한 노력 · 사회적 책임 등 				

지 표 명	3. 재난안전관리				
지표정의	재난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노력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시설물 재난 및 인적 재해 발생건수 : 인적피해(사고)발생 건수 : 이용인원대비 발생률 1%이내, 사망피해 0건				

③ 경영시스템 (20점)

지 표 명	1. 경영 효율화				
지표정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평가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p>○ 구리시, 구리시의회에 제출한 경영개선안 이행 실적(10점 사례)</p> <p>- 본부(경영지원부, 개발부) 조직 통합 운영 및 인원조정</p> <p>-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p> <p>- 시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법인등록면허세 자체해결, 수익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p>				

지 표 명	2. 수탁관리 사업 운영				
지표정의	구리도시공사 수탁 관리 실적 및 체계적인 관리 평가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정량·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p>· 구리시 시설물 수탁관리 실적(3점) : 2018년~2019년</p> <p>· 시설·환경 관리(2점) : 수탁 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평가</p> <p>· 공공성 증진 노력(2점) : 공기업으로서 역할 평가</p> <p>· 고객서비스 품질관리(2점) : 고객친절도 제고 노력 평가</p> <p>※ 기간제 근로자 업무 배치 이전 사전 친절교육 실시 등</p> <p>· 신규 수탁관리 사업 확보(1점) : 신규 수탁관리 사업 실적</p>				

4 개발사업 경영성과 (57점)

지 표 명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지표정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배 점	2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WDC 조성사업 공동시행자로서의 역할 및 추진 실적 - (공동시행자)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 노력 등 - (지시사항) 도시개발담당관-4840(2018.11.22)호에 대한 추진실적 *2018.11.20. GWDC 조성사업 시장지시사항 알림 				

지 표 명	2.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지표정의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남양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공동시행자로서의 역할 및 추진실적 (공사채 발행 등 사업비 확보 방안) -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 노력 등 				

지 표 명	3.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지표정의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확보 노력 및 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노력 및 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 노력 ·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실적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추진 실적 				

지 표 명	4. 갈매지식산업센터 조성				
지표정의	갈매지식산업센터 조성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노력 및 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 노력 · 분양률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 타당성조사 및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추진 실적 				

지 표 명	5.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				
지표정의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추진 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노력 및 실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설득 노력 · 사업비 확보 노력 및 실적 				

지 표 명	6.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종합 개발				
지표정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 종합 개발				
배 점	3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노력 및 실적 · 사업비 확보 노력 및 실적 				

지 표 명	7.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				
지표정의	구리도시공사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				
배 점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신규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실적				

⑤ 정책 및 시책 준수 (10점)

지 표 명	공기업 정책 및 구리시 시책 추진				
지표정의	공기업(행안부 지침 등) 정책준수 및 구리시 시책 추진				
배 점	1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정책 준수(3점) · 2019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향상(3점) : 전년대비 향상을 · 구리시 시책 및 시장지시사항 추진 실적(4점) 				

【비계량지표 평가기준】

-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 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 0점

○ 평가등급별 평가기준

- 1등급 :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 2등급 : 80점 ~ 90점 미만
 -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등급 : 70점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평가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4등급 : 60점 ~ 70점 미만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등급 : 50점 ~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6등급 : 40점 ~ 5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7등급 : 30점 ~ 40점 미만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8등급 : 20점 ~ 3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9등급 : 0점 ~ 20점 미만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점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급 기준

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별표 3】

기 본 연 봉

□ 기본연봉 : 95,000,000원

※ 2017년도 경기도 도시공사 협의회 사장(CEO) 평균 연봉 적용

인사팀

인사팀

【별표 4】

연 봉 조 정 표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

(단위: %)

평가등급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가	나	다	라	마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 전부)	가	10	5	3	0	△10
	나	5	3	2	△2	△12
	다	3	2	1	△4	△14
	라	0	△2	△4	△8	△18
	마	△10	△12	△14	△18	△20

【별표 5】

성 과 급 지 급 률 표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

평가등급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가	나	다	라	마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 전부)	가	400~361	331~360	330~300	0	0
	나	300~261	231~260	230~200	0	0
	다	200~161	131~160	130~100	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적용

【별표 6】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계약서 제10조 제2항)

① 경영성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가. 연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나. 해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 9. 21.>

② 시장이 별도로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가. 연임기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기준에 없는 경우, 시장이 제출한 연임사유가 시장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 할 경우

나. 해임기준

-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기업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계약서 제6조 제3항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경고, 4회 해임)